

##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25
------------	-----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 제안이유

- 양주시 체육가맹단체의 지속적인 증가 및 체육행정 수요증가로 인하여 체육진흥 사업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재원을 확보하고, 체육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양주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현 실태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체육업무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의미가 모호했던 “체육업무담당주사”를 “체육진흥팀장”으로 변경  
(안 제4조제4항, 안 제16조제2항)
- 나. 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 [매년 4억원씩 5년간 20억원 추가조성] (안 제12조제1항)
- 다. 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기간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변경 (안 제12조제2항)
- 라. 기금의 사용에 있어 양주시체육회 경상운영비 지원시 기금조성액 1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범위를 달리한 조항은 이미 기금 조성현액이 20억원이므로 불필요한 사문 일부 삭제 (안 제15조제2항)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체육업무담당주사가"를 "체육진흥팀장이"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20억원"을 "40억원"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 한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조성액이 10억원미만시는 이자수익금의 20% 범위내에서, 10억원이상시에는 이자수익금의 10% 이내에서 경상운영비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체육업무담당주사로"를 "체육진흥팀장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며, 간사는 <u>체육업무담당주사가</u> 된다.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 <u>체육진흥팀장이</u> _____.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u>20억원</u> 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② 기금의 조성은 <u>2004년부터 2008년까지</u> 5년간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_____ _____ 40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_____ <u>2009</u> _____ <u>2013</u> _____ _____.
제15조(기금의 사용) ① <생략>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하며 양주시체육회의 경상운영비로는 당해연도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조성액이 <u>10억미만시는</u> 이자수익금의 <u>20%</u> 범위내에서, <u>10억원이상시에는</u> 이자수익금의 <u>10%</u> 이내에서 경상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u>&lt;삭제&gt;</u>
제16조(기금관리 담당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체육업무담당주사로</u> 한다.	제16조(기금관리 담당의 지정) ① _____ _____ _____ <u>체육진흥팀장</u> _____ _____.